

물리적방호 교육 담당직무별 교육대상자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제5조의2제1항 관련)

1. 교육시간

교육대상		교육시간	
		신규교육	보수교육
원자력사업자의 종업원	물리적방호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	물리적방호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으로 지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8시간 이상	매년 4시간 이상
	물리적방호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종업원	종업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 2시간 이상	매년 2시간 이상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물리적방호와 관련된 단체 또는 기관의 직원	물리적방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물리적방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지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8시간 이상	매년 4시간 이상
	물리적방호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직원	직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 2시간 이상	매년 2시간 이상

2. 교육내용

교육대상	교육내용
원자력사업자의 종업원	1. 물리적방호 일반사항 2. 물리적방호에 관한 법령 3. 방호비상대응에 관한 사항 4. 물리적방호 체제 및 동향 5. 위협평가에 관한 사항 6. 방호문화 7. 물리적방호 시스템 설계 8. 물리적방호 시설 및 장비 시험 · 실습 9. 기타 사항

	물리적방호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종업원	1. 물리적방호 일반사항 2. 물리적방호에 관한 법령 3. 방호비상대응에 관한 사항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물리적방호와 관련된 단체 또는 기관의 직원	물리적방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1. 물리적방호 일반사항 2. 물리적방호에 관한 법령 3. 방호비상대응에 관한 사항 4. 물리적방호 체제 및 동향 5. 위협평가에 관한 사항 6. 방호문화 7. 물리적방호 시스템 설계 8. 물리적방호 시설 및 장비 시험 · 실습 9. 기타 사항
	물리적방호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직원	1. 물리적방호 일반사항 2. 물리적방호에 관한 법령 3. 전자적 침해행위 방지에 관한 사항